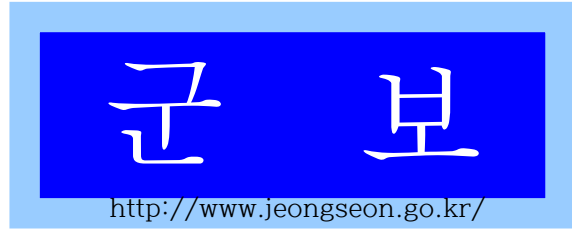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9호 2019. 7. 29. (월)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6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19-170호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80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폐지)(안) 주민 공람·공고.....17
- 정선군 공고 제2019-811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18
- 정선군 공고 제2019-812호 정선군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및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6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6-5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6
2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8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6
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12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6
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16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6
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19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8
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21	2019. 7. 23.	건물 멸실	신동읍 예미리 178-18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19-170호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2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방지 및 군계획시설인 도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건 명 :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다.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라. 면 적 : 274,589㎡ (변경없음)

마.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문곡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74,589	-	274,589	100.0	
계획관리지역	274,589	-	274,589	100.0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법적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문 곡 취락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	274,589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⑩	문 곡 취락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274,589	-	274,589	

④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철도

1) 철도 총괄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①	철 도	일 반 철 도	문곡리 590-10철	문곡리 산173-2철	별어 곡역	828	7,397	2011.1.28 (강원고시 2011-51호)	소로3-13호선 (A=116㎡) 중복결정

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3	4,547	38,672	3	1,826	18,260	7	1,081	8,648	13	1,640	11,764
	변경	22	4,435	37,752	3	1,826	18,260	6	969	7,728	13	1,640	11,764
중로	기정	1	367	4,524	-	-	-	-	-	-	1	367	4,524
소로	기정	22	4,180	34,148	3	1,826	18,260	7	1,081	8,648	12	1,273	7,240
	변경	21	4,068	33,228	3	1,826	18,260	6	969	7,728	12	1,273	7,240

* 도로면적은 교차로 중복면적 및 가각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총계	22개 노선				-	4,435	-	-	-	-	-	
중로	1개 노선				-	367	-	-	-	-	-	
3류	1개 노선				-	367	-	-	-	-	-	
기정	중로	3	1	10~15	간선도로	367	311-3도	소로2-17 (135-3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소로	21개 노선				-	4,068						
1류	3개 노선				-	1,826						
기정	소로	1	1	10	간선도로	634	중로3-1 (42-1도)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6,340㎡ 중 구역 외 150㎡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610	중로3-1 (319-6도)	소로1-3 (590-10첼)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582	소로2-12 (319-6도)	북측구역계 (590-10첼)	일반 도로	-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5,820㎡ 중 구역 외 363㎡
2류	6개 노선				-	969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156	소로1-2 (127-9도)	소로1-3 (590-26제)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65	소로3-7 (327-9도)	소로2-4 (327-9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2	소로2-4 (327-9도)	소로2-14 (80-12구)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폐지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2	소로2-4 (327-9도)	소로2-14 (80-12구)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405	중로3-1 (322-15전)	소로1-3 (115-1제)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7	소로1-2 (127-9도)	소로1-3 (590-25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38	소로2-6 (327-9도)	소로2-12 (115답)	일반 도로	-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기정	소로	2	17	8	간선도로	98	중로3-1 (42-1도)	46-1임	일반 도로	-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3류 합계	12개 노선				-	1,273						
기정	소로	3	1	3.5	국지도로	9	소로1-1	102-1학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3	소로1-2 (67-2철)	소로1-3 (595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60	중로3-1 (590전)	산173-4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5	6	집산도로	220	중로3-1 (324-2도)	591구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95	중로3-1 (322-2도)	소로2-4 (127-4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41	소로3-6 (121-4도)	소로2-12 (80-4구)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76	소로1-2 (127-9도)	소로3-6 (123-2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02	소로3-7 (327-9도)	소로2-12 (329-26답)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99	소로1-1 (97-9전)	100-1학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26	소로3-5 (317-29전)	317-22전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12	소로1-3 (590전)	55-1답	일반 도로	-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소로	3	13	4	특수도로	50	소로1-2 (127철)	127-14철	보행자 전용도 로	-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철도 및 완충녹지와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11	-	노선 폐지 - B=8m, L=112m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주거시설 등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주민 수해도가 낮으며, 연계도로 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소로2-11호선을 폐지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방지 및 군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차장 : 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2,706	-	2,706	-	
기정	①	공원	소공원	문곡리 82-2번지 일원	1,617	-	1,617	2004.09.15. (정선군고시 2004-42호)	
기정	②	공원	소공원	문곡리 66-7번지 일원	444	-	444	2004.09.15. (정선군고시 2004-42호)	
기정	④	공원	소공원	문곡리 319-4번지 일원	645	-	645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문곡 취락지구 내 정선선 철도 좌우변	21,919	-	21,919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소로3-13호선 (A=84㎡) 중복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5,880	-	5,880	-	
기정	①	공공청사	남면 사무소	문곡리 103-1번지 일원	2,776	-	2,776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②	공공청사	보건소	문곡리 329-2번지 일원	1,092	-	1,092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기정	③	공공청사	남면 파출소	문곡리 322-4번지 일원	769	-	769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기정	④	공공청사	남면119 지역대	문곡리 80-16번지 일원	1,243	-	1,243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나.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23,979	-	23,979	-	
기정	①	학 교	초등학교	문곡리 100-1번지 일원	12,338	-	12,338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기정	②	학 교	중학교	문곡리 313번지 일원	11,641	-	11,641	2001.11.17. (정선군고시 2001-83호)	

다. 문화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복지 생활관	문곡리 325-1번지 일원	540	-	540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라. 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5,221	-	5,221		
기정	①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1	문곡리 116번지 일원	2,898	-	2,898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기정	②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2	문곡리 327-2번지 일원	2,323	-	2,323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4. 방재시설 : 변경없음

가. 하천

1)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기정	①	하천	지방하천	문곡리 590천	문곡리 590천	1,048	40~75	60,307	2011.01.28. (강원고시 2011-51호)	
기정	②	하천	소하천	문곡리 590천	문곡리 138-2천	81	15~30	1,558	2017.12.05. (정선군고시 2017-196호)	

5.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가. 하수도

1)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문곡리 68-1번지 일원	1,562	-	1,562	2004.09.15. (정선군고시 2004-42호)	

⑥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계		274,589	-	274,589	-	
A	주 거 용 지	87,540	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	88,460	증) 920	
B	상 업 용 지	5,234	남면 문곡리 134-2번지 일원	5,234	-	
C	녹 지 용 지	92,145	남면 문곡리 138-2번지 일원	92,145	-	
D	공공시설용지	89,670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88,750	감) 920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구 분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변경면적 (㎡)			
합 계			274,589	-	274,589	-		
주거용지			87,540	-	88,460	증) 920		
아파트용지		-	15,179	-	15,179	-		
A1-1	A1-1	아파트용지	7,311	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	7,311	-		
A1-2	A1-2	ㄹ	7,868	남면 문곡리 596번지 일원	7,868	-		
단독주택용지		-	67,438	-	68,358	증) 920		
A2-1	A2-1	단독주택용지	6,336	남면 문곡리 81번지 일원	12,227	증) 5,891	A2-3 합병	
A2-2	A2-2	ㄹ	2,118	남면 문곡리 80-16번지 일원	2,118			
A2-4	A2-3	ㄹ	8,871	남면 문곡리 120-7번지 일원	8,871	-		
A2-5	A2-4	ㄹ	7,149	남면 문곡리 112-5번지 일원	7,149	-		
A2-6	A2-5	ㄹ	6,328	남면 문곡리 329-3번지 일원	6,328	-		
A2-7	A2-6	ㄹ	6,068	남면 문곡리 54-3번지 일원	6,068	-		
A2-8	A2-7	ㄹ	5,963	남면 문곡리 95-11번지 일원	5,963	-		
A2-9	A2-8	ㄹ	1,395	남면 문곡리 99-5번지 일원	1,395	-		
A2-10	A2-9	ㄹ	192	남면 문곡리 103-3번지 일원	192	-		
A2-11	A2-10	ㄹ	3,182	남면 문곡리 102-2번지 일원	3,182	-		
A2-12	A2-11	ㄹ	1,674	남면 문곡리 42번지 일원	1,674	-		
A2-13	A2-12	ㄹ	4,858	남면 문곡리 317-23번지 일원	4,858	-		
A2-14	A2-13	ㄹ	2,583	남면 문곡리 138-1번지 일원	2,583	-		
A2-15	A2-14	ㄹ	1,875	남면 문곡리 317-5번지 일원	1,875	-		
A2-16	A2-15	ㄹ	3,875	남면 문곡리 142-2번지 일원	3,875	-		
A2-3	-	ㄹ	4,971	남면 문곡리 109-2번지 일원	-	감) 4,971	폐지	

도면번호		구 분	기정면적 (㎡)	확 지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변경면적 (㎡)		
근린생활용지		-	4,923	-	4,923	-	
A3-1	A3-1	근린생활용지	3,980	남면 문곡리 321-2번지 일원	3,980	-	
A3-2	A3-2	〃	246	남면 문곡리 319-1번지 일원	246	-	
A3-3	A3-3	〃	697	남면 문곡리 135-4번지 일원	697	-	
상업용지			5,234	-	5,234		
B1-1	B1-1	상업용지	3,325	남면 문곡리 129-11번지 일원	3,325	-	
B1-2	B1-2	〃	513	남면 문곡리 104-5번지 일원	513	-	
B1-3	B1-3	〃	1,396	남면 문곡리 134-2번지 일원	1,396	-	
녹지용지			92,145	-	92,145	-	
C2-1	C2-1	소공원	444	남면 문곡리 66-7번지 일원	444	-	
C2-2	C2-2	소공원	1,617	남면 문곡리 82-2번지 일원	1,617	-	
C2-3	C2-3	소공원	645	남면 문곡리 319-4번지 일원	645	-	
C3	C3	녹 지	5,655	남면 문곡리 138-2번지 일원	5,655	-	
C4	C4	하 천	61,865	남면 문곡리 590번지 일원	61,865	-	
C5	C5	완충녹지	21,919	철도(정선선) 좌우변	21,919	-	
공공시설용지			89,670	-	88,750	감) 920	
D1	D1	도 로	41,070	남면 문곡리 42-1번지 일원	40,150	감) 920	
D2-1	D2-1	주차장	962	남면 문곡리 312-1번지 일원	962	-	
D2-3	D2-2	주차장	122	남면 문곡리 325-15번지 일원	122	-	
D2-4	D2-3	주차장	1,050	남면 문곡리 321-17번지 일원	1,050	-	
D2-5	D2-4	주차장	1,887	남면 문곡리 127-14번지 일원	1,887	-	
D3	D3	하수처리장	1,562	남면 문곡리 68-1번지 일원	1,562	-	
D4-1	D4-1	공공청사	2,776	남면 문곡리 103-1번지 일원	2,776	-	
D4-2	D4-2	공공청사	1,092	남면 문곡리 329-2번지 일원	1,092	-	
D4-3	D4-3	공공청사	769	남면 문곡리 322-4번지 일원	769	-	
D4-4	D4-4	공공청사	1,243	남면 문곡리 80-16번지 일원	1,243	-	
D5-1	D5-1	학 교	12,338	남면 문곡리 100-1번지 일원	12,338	-	
D5-2	D5-2	학 교	11,641	남면 문곡리 313번지 일원	11,641	-	
D6-1	D6-1	체육시설	2,898	남면 문곡리 116번지 일원	2,898	-	
D6-2	D6-2	체육시설	2,323	남면 문곡리 327-2번지 일원	2,323	-	
D7	D7	철 도	7,397	남면 문곡리 127-14번지 일원	7,397	-	
D8	D8	문화시설	540	남면 문곡리 325-1번지 일원	540	-	

㉞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1-1 ~ A1-2	남면 문곡리 593번지 일원	허 용 용 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2층 이하		
			배 치 (권 장)	○남향 또는 동남향 위주의 배치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80m 이하로 배치		
			형 태 (권 장)	○외벽 :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출 또는 후퇴 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설치 ○지붕 :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형태의 지붕 설치		
			색 채 (권 장)	○단지 북측은 남면의 랜드마크 기능 및 단지 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북측 이외의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건축선	-		
기정	A2-1 ~ A2-11 A2-13 ~ A2-16	남면 문곡리 109-2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변경	A2-1 ~ A2-10 A2-12 ~ A2-15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 치		
			형 태 (권 장)	○경사지붕(경사구배 : 3/10 이상, 5/10 이하)		
			색 채 (권 장)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규 제)	○중로3-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5m 지정 ○소로1-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2-12	남면 문곡리 42번지 일원	허 용 용 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변경	A2-11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권 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권 장)	○ 경사지붕(경사구배 : 3/10 이상, 5/10 이하)		
			색 채 (권 장)	○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규 제)	-		
기정	A3-1 ~ A3-3	남면 문곡리 321-2번지 일원	허 용 용 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제외)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한다) ○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권 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권 장)	○ 경사지붕(경사구배 : 3/10 이상, 5/10 이하)		
			색 채 (권 장)	○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규 제)	○ 종로3-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5m 지정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1-1 ~ B1-3	남면 문곡리 134-2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 단독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당해용도 2천㎡ 미만인 것) ○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 숙박시설(3층, 연면적 660㎡ 이하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권 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권 장)	○ 경사지붕(경사구배 : 3/10 이상, 5/10 이하)	
			색 채 (권 장)	○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규 제)	○ 중로3-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5m 지정 ○ 소로1-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기정	D4-1 D4-3	남면 문곡리 329-2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권 장)	○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	
			색 채 (권 장)	○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 중로3-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5m 지정 ○ 소로1-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구분	도 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D4-2 D4-4	남면 문곡리 329-2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및 그 부속용도 시설 ○공공업무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	
			색 채 (권 장)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	
기정	D5-1 D5-2	남면 문곡리 100-1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권 장)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	
기정	D6-1 D6-2	남면 문곡리 327-2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생활체육시 설 및 그 부속용도시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권 장)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	
기정	D8	남면 문곡리 325-1번지 일 원	허 용 용 도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 설)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형 태	-	
			색 채 (권 장)	○2020 정선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권의 경관색채	
			건축선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80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폐지)(안) 주민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1. 사업 개요

가. 건명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 결정(폐지)(안)

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98-1번지 일원

다. 면적 : 7,206㎡(폐지)

라. 주요내용 :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노후된 지방상수도 정수시설의 폐지 계획에 따라 수도시설 폐지인가(강원도고시 제2014-463호, 2014. 10. 31))완료된 지방상수도시설(북일정수장)에 대한 군계획시설을 해제코자함

2.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폐지)(안)에 대한 주민의견 폐지관련된 내용 청취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폐지)(안) 도서 : 실음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사북읍사무소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9. 7. 31. ~ 2019. 8. 16.)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열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811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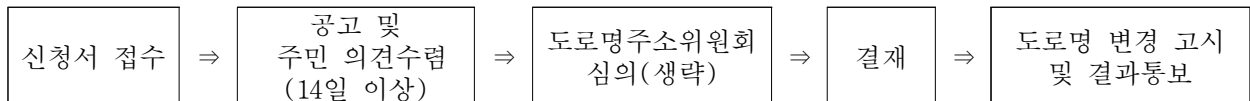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7. 26. ~ 2019. 8. 12.
2.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도로명 부여(변경) 사유	비고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	기초번호		
정선군	백두대간로 1차중속구간	700-1 → 700-142	햇골길	1→142	햇골이라는 자연지명 인용	

※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5. 의견제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560-2184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제 출 처 :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

정선군 공고 제2019-812호

**정선군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및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정 선 군 수

1. 폐지 및 제정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 나.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자치법규명

- 가.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 나.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4. 입법예고 : 2019. 7. 29. ~ 2019. 8. 19.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0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건설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97), 팩스(033-560-209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메일(ks1332@korea.kr) 등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자치법규안 각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선군 공무원 6급 이상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정선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5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전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정선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도로명 변경 관련 주민 의견서

의견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도 로 명 :

※ 의견 및 사유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